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)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7일

새만금개발청장

1. 고시번호 및 허가연월일

- 고 시 번 호 : 제2026-8호
- 허가연월일 : 2026. 4. 27.

2. 점용·사용목적 : 해양무인이동체 실증을 위한 부이(4EA) 설치

3. 점용·사용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131번지 인근
새만금호소 내

4. 점용·사용 면적 : 754m²

5. 점용·사용 기간 : 2026. 5. 1. ~ 2027. 12. 31.

6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
- 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